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78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이훈기·김태년·채현일

박희승 • 위성곤 • 김태선

김준혁 • 이기헌 • 황정아

조인철 • 박지원 • 이병진

송재봉・황 희・복기왕

정태호 • 박정현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1천여 건 이상의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들 간의 합리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며, 위원

장이 왜곡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견제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 제13조에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개별 이념이 아니라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위원개인의 의견들이 남발하면서 합리적 결론 도출 및 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법률 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의 계기 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개정, 제7조에 제5항 신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거와의 진실된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4조에 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8명(대통령이"를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대통령이"로, "구성한다)을"을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을"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보존 및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9명</u>	<u>13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	
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u>8명(대통령이</u> 소속되	<u>10</u> 명(국회의장이 추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	천하는 2명, 대통령이
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	
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u>구</u>	
<u>성한다)을</u> 대통령이 임명한다.	<u>구성</u>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
	<u>명을</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u><신 설></u>	제13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시행일을 말한다)부터 <u>2년</u>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 전 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u>3</u> 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
하여야 현	한다.		

-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보존 및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
과 같음)		

2
<u>5년</u>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사기간)	1 -	
₹}		 <u>5</u> 년

② · ③ (생 략)
제34조(<u>국가</u>의 의무) 국가는 진실
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
예의 회복을 위하여 <u>노력하여</u>
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
한 법적 · 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의
의무) ①
<u>필요한 시책을 수</u>
립하고 시행하여야
<u>日の工 </u>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
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